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09. 9. 7.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한 『지방자치법』이 2009. 4. 1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신설)
 - 구미시의회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영리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신설)
 - 구미시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함.
(단서조항으로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에 한함.)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35조(겸직 등 금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2항, 제28조1항, 제29조1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1항
-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 2009. 10. 2시행으로 전국 대부분 기 개정 하였거나 개정 추진 중임.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와 제6조의 신설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식)

지방의회의원 검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 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검 직 내 용	기관·단체명				
	직위		제직기간		
	보수	(택일) 연월원 원	전화번호		
	주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의회의원 (인) 구미시의회의장 귀하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u>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현행과 같음)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현행과 같음)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	

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전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검직신고) ①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와 제6조의 신설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